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[제출용]

등기번호	721306	
등록번호	110111-7213062	
상 호	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. .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	. .

공고방법	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와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	. .
------	---	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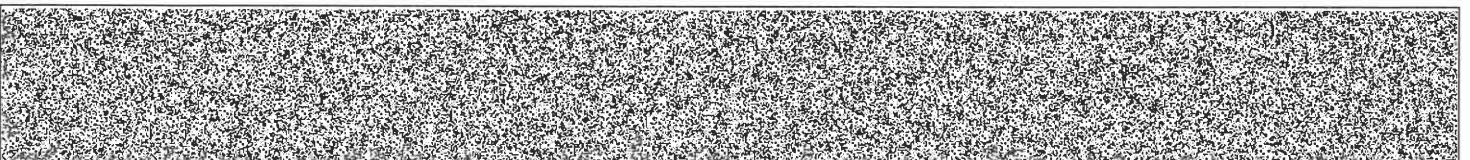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. .
--------	-----------	-----

발행할 주식의 총수	20,000,000 주	. .
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
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자본금의 액	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
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60,000 주	금 300,000,000 원	. .
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33,332 주	금 2,166,660,000 원	2019.11.02 변경 2019.11.05 등기
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93,332 주	금 2,466,660,000 원	2019.11.05 변경 2019.11.05 등기
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33,332 주	금 2,166,660,000 원	2019.11.05 변경 2019.11.05 등기
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,299,832 주		2019.11.29 변경 2019.11.29 등기
제1종종류주식 312,000 주		
제2종종류주식 554,500 주	금 6,499,160,000 원	

목 적
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 부투법 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·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·운용과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
1.부동산의 취득·관리·개량 및 처분
2.부동산의 개발사업
3.부동산의 임대차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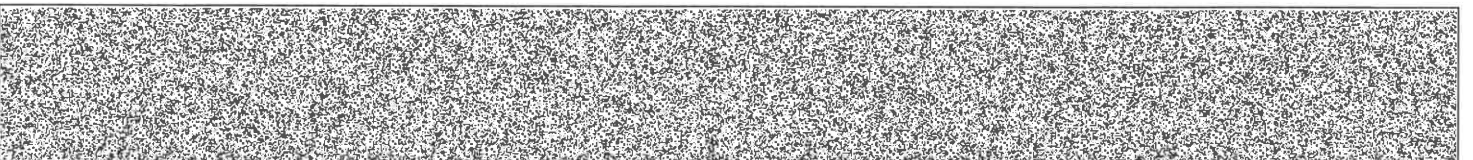


등기번호	721306
------	--------

4.증권의 매매 5.금융기관에의 예치 6.지상권·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·관리·처분 7.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·관리·처분
--

임원에 관한 사항	
사내이사 박영희 750103-***** 2022 년 09 월 19 일 중임 2022 년 09 월 20 일 등기	
대표이사 박영희 750103-*****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, 329동 1901호(원문동, 래미안슈르) 2022 년 09 월 19 일 중임 2022 년 09 월 20 일 등기	
기타비상무이사 한갑희 591118-***** 2022 년 09 월 19 일 중임 2022 년 09 월 20 일 등기	
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-***** 2022 년 09 월 19 일 중임 2022 년 09 월 20 일 등기	
감사 송인석 690520-***** 2022 년 09 월 19 일 중임 2022 년 09 월 20 일 등기	

종류주식의 내용
제1종종류주식 ①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 회사는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 ②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 1.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6.7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③어느 사업연도에 어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 ④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 1.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2.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3.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10%는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, 나머지 9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⑤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2019 년 11 월 29 일 설정 2019 년 11 월 29 일 등기
제2종종류주식 ①회사가 발행할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 회사는 종류주식을 [오백만]([5,000,000]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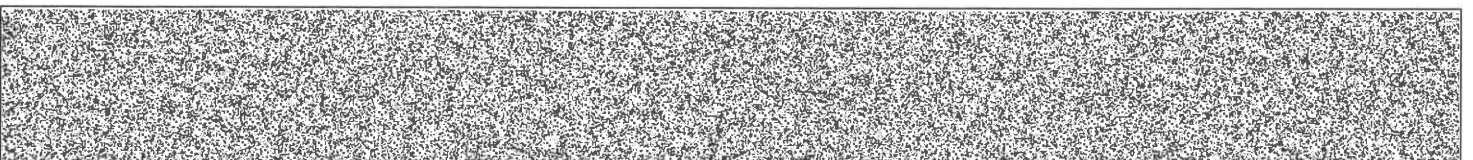


등기번호	721306
------	--------

②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 1.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6.7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 2.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 ③어느 사업연도에 어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 ④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 1.최우선으로, 제1종 종류주식과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2.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은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3.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10%는 제1종 종류주식, 제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, 나머지 9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 ⑤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2019 년 11 월 29 일 설정 2019 년 11 월 29 일 등기

기 타 사 항 1. 주식의 양도 회사의 모든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, 이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 2019 년 09 월 24 일 말소 2019 년 11 월 05 일 등기 1. 명의개서대리인 상호:주식회사 국민은행 본점소재지: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2019 년 10 월 31 일 변경 2019 년 11 월 05 일 등기 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. 1.주주총회의 해산결의 2.합병 3.파산 4.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5.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 6.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7.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

회사성립연월일	2019 년 08 월 23 일
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

등기번호	721306
------	--------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	2019 년 08 월 23 일 등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수수료 1,000원 영수함

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서기 2022년 09월 23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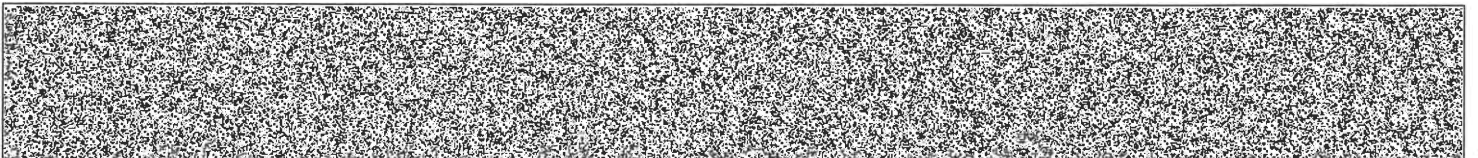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900070347010302291002220062013017217K1T1N1Q0U1D1 5

발급확인번호 3062-AAWJ-VVWA

발행일:2022/09/23